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58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종교단체 B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손○○
피 고	○○군수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4. 4.자 취득세 117,249,430원(가산세 포함)[1]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22. 4. 7.자 2019년분 재산세 2,094,290원, 지역자원시설세 621,940원, 2020년분 재산세 2,109,230원, 지역자원시설세 626,550원, 2021년분 재산세

1) 2022. 4. 4. 부과된 취득세 117,969,120원 - 2023. 7. 27. 경정결정으로 감액된 719,690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2,139,100원, 지역자원시설세 635,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종교단체 산하 C회에 소속된 종교단체로서, 2017. 1. 8. 제정된 원고의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 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A종교단체 B교회라 칭한다.
제2조(소속) 본 교회는 D교단의 C회에 소속한다.
제3조(목적) 본 교회는 구원 받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구약 성경 말씀이 신앙과 생활에 유일한 법칙임을 고백하고 신앙 교육과 선교와 구제 봉사와 사명을 다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치) 본 교회의 소재지는 ○○도 ○○군 E(도로명: ○○도 ○○군 F)로 한다.
(중략)
제8장 선교
제15조(의료 선교) B 교회는 암환우 힐링센터(암 요양원)를 운영하여 의료 선교를 한다.
1. 매일 예배
2. 목요 기도회: 암환우들을 위한 기도회
3. 무료 식사 제공
4. 시설 이용
제16조(노인 선교) B 교회는 공동체를 운영하여 노인 선교를 한다.
1. 사랑의 공동체 운영
2. 매일 예배
3. 시설 이용
제17조(노숙인 선교) 노숙인 무료 급식을 제공하여 노숙인 선교를 한다.

2)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1. 매일 예배 2. 무료 식사 제공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18. 10. 25. ○○ ○○군 E 외 4필지(G, H, I, J) 지상 건축물 2개동 1,970.1㎡[의원 등 1,405.21㎡(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및 다가구 주택 564.89㎡(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10. 29.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1, 2 건물 중 일부인 1,648.53㎡(이 사건 제1 건물 1,245.34㎡ 및 이 사건 제2 건물 403.19㎡)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21. 10. 21. 및 2021. 11. 3. 이 사건 제1 건물 중 예배당을 제외한 1,200.77㎡와 이 사건 제2 건물 중 담임목사 사택을 제외한 338.35㎡가 암 환자들이 기거하는 주거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4. 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117,969,1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9,871,2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928,550원(가산세 포함) 합계 132,768,940원을 부과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22. 4. 7.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 표와 같이 2019, 2020,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9,04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과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구분	재산세 등			
	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019년도	2,984,730	2,094,290	621,940	268,500
2020년도	3,006,200	2,109,230	626,550	270,420
2021년도	3,049,070	2,139,100	635,730	274,240
계	9,040,000	6,342,620	1,884,220	813,160

마. 원고는 위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조세심판원은 2023. 7. 11. 이 사건 제1 건물 1,405.21㎡ 중 1층 8.47㎡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2023. 7. 27. 위 결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득세 719,690원, 지방교육세 60,210원, 농어촌특별세 30,050원 합계 809,95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감액 경정결정하여 2023. 8. 17. 원고에게 환급(환급하고 남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8.47㎡에 대한 경정결정을 반영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면적 산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구분	층별	면적	당초(감면 등)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당초의 감면(A) 부분]	
			감면(A)	과세	감면유지	과세전환
이 사건 제1 건물	지하1	387.97	387.97	-	53.04 (예배당)	334.93[3] (식당 등)
	1층	493.74	333.87	159.87 (의원)	-	333.87 (사무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2층	482.22	482.22	-	-	482.22 (주거시설)
	옥탑	41.28	41.28	-	-	41.28
	계(㉠)	1,405.21	1,245.34	159.87	53.04	1,192.3
이 사건 제2 건물	지하1	79.79	79.79	-	9.16 (사택 안분)	70.63 (주거시설 안분)
	1층	161.7	161.7	-	55.68 (담임목사 사택)	106.02 (주거시설)
	2층	161.7	-	161.7 (주거시설)	-	-
	3층	161.7	161.7	-	-	161.7 (주거시설)
	계(㉡)	564.89	403.19	161.7	64.84	338.35
합계(=㉠+㉡)		1,970.1	1,648.53	321.57	117.88	1,530.6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신앙교육, 선교 및 구제 봉사의 사명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이 사건 제1, 2 건물을 암 환자 힐링센터로 의료 선교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이 모두 면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당초 원고의 감면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비과세 통지를 하였는데, 이후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3) 의원 안분 49.29㎡ + 식당 및 티룸 285.6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종교단체 등이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종교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건물 중 지하 1층 식당 등(334.93㎡), 1층 사무실(333.87㎡) 및 옥탑(41.28㎡) 부분

1)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해당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10, 1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제1 건물 중 지하 1층 식당 등(334.93㎡), 1층 사무실(333.87㎡) 및 옥탑(41.28㎡) 부분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종교단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교, 봉사, 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 준다는 것으로서 그 문언적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위 규정은 종교단체의 직접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을 위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영위하는 모든 활동을 보호하려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식당, 티룸, 사무실, 옥탑이 종교단체의 해당 사업에 필수적이라거나 종교시설 이용편의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은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재산세 등의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1, 2 건물의 해당 부분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제1 건물의 식당 및 티룸에서 간헐적으로 예배 활동이 이루어진 사실만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출장복명서(을 제2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암 환자들을 위한 일반적인 식당 및 티룸이 주된 이용 목적이었다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용도만으로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1층 사무실 및 옥탑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20. 7. 3.자 출장복명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가 위 1층 사무실이 암 환자의 거소로서 힐링센터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종교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제1 건물 1층의 의원과 암 환자 시설(암 환자 숙소와 복도 등)을 구분하라는 지도에 따라 경계벽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위 1층 사무실이 암 환자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왔음을 뒷받침한다.

다. 이 사건 제1 건물 중 주거시설(482.22㎡) 및 이 사건 제2 건물 중 주거시설(338.35㎡[4]) 부분

1)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참조).

4) = 70.63㎡(이 사건 제2 건물 지하 1층 주거시설 안분) + 106.02㎡(이 사건 제2 건물 1층 주거시설) + 161.7㎡(이 사건 제2 건물 3층 주거시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제1 건물 중 주거시설(482.22㎡) 및 이 사건 제2 건물 중 주거시설(338.35㎡) 부분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 건물 중 주거시설(482.22㎡) 부분은 의원 용도로 신축되었고, 이 사건 제2 건물 중 주거시설(338.35㎡) 부분은 다가구주택 용도로 신축되었다. 실제로 이 사건 제1 건물 중 주거시설(482.22㎡)에는 암 환자들이 거주하는 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제2 건물 중 주거시설(338.35㎡) 내부는 부엌과 거실로 이루어져 침대, 가구, 이불장 등의 살림살이를 갖추고 있어 일반 주거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② 종교단체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그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보편적 문화인 종교 등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는 데 있는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종교의식, 예배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2 건물 중 위 주거시설 부분은 암 환자들만이 이용하는 공간에 해당하고, 종교단체의 일반적인 신도들이 사용하는 공간과는 거리가 있다. 더욱이 종교 사업의 본질적 내용인 종교의식, 예배 등 종교 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다.

③ 원고는 암 환자들의 선교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암 환자들이 필요불가결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존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암 환자들은 원고의 구성원이 아닌 선교의 대상에 해당하는바, 이들이 원고의 종교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존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암 환자들이 위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확하므로, 위 주거시설들이 원고의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암 환자들이 위 주거시설에서 내부전산망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므로 위 주거시설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부동산 중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내부전산망을 통해 예배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주거시설이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한 동법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제1, 2 건물 중 1,530.65㎡[5]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건물 중 1,530.65㎡를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건물 취득일인 2018. 10. 25.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건물을 취득하고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취득세 비과세 통지까지 받은 이상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

5) = 334.93㎡(이 사건 제1 건물 지하 1층 식당 등) + 333.87㎡(이 사건 제1 건물 1층 사무실) + 482.22㎡(이 사건 제1 건물 2층 주거시설) + 41.28㎡(이 사건 제1 건물 옥탑) + 70.63㎡(이 사건 제2 건물 지하 1층 주거시설 안분) + 106.02㎡(이 사건 제2 건물 1층 주거시설) + 161.7㎡(이 사건 제2 건물 3층 주거시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취득세 감면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징수대상이 되고, 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최○○

판사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끝.